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2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2월 8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2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,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급식지원 대상의 구체화(안 제2조)
- 관련 법령 정비 및 조문의 명확화(안 제2조)
-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(안 제2조제6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,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 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 본문에서는 잘못 인용되었던 조례 위임 조항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‘제36조제2항’을 ‘제36조제6항’으로 수정하였으며,
- 또한 급식지원의 대상자를 ‘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’으로 구체화하면서 ‘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’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,
- 같은 조 제1호에서도 ‘차상위계층’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를 인용 조항으로 추가하였으며,
-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,
-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기존 중위소득 “52퍼센트”에서 “60퍼센트로 개정함.

○ 검토결과

- ’23년 10월 국·시비 보조사업인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려는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52%에서 60%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약 40명의 아동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, 현재 우리 구 급식아동수는 총 868명으로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은 349명,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519명이 지원받고 있음.
- 이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개정하였으며,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문 해석의 모호성을 줄였으며, 잘못 인용되었던 상위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2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,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급식지원 대상의 구체화(안 제2조)
- 나. 관련 법령 정비 및 조문의 명확화(안 제2조)
- 다.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(안 제2조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예산 반영

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2) 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3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12. 21. ~ 2024. 1. 10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6조제2항”을 “제36조제6항”으로, “다음”을 “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차상위계층 아동”을 “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보호대상자”를 “지원대상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52퍼센트”를 “6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급식지원의 대상자) 「아동 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6조제 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2조(급식지원의 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 제36조제 6항----- --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 ----- . 다만, 18 세 이상인 경우에도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의 아동, <u>차상위계층 아동</u>	1.----- ----- ----- <u>같은 조 제10호에 따른</u> <u>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</u>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에 따른 <u>보호대상자인 아동</u>	2.----- ----- <u>지원대상자</u> -----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 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<u>52퍼센트</u> 이하인 가 구의 아동	6.----- ----- ----- <u>60퍼센트</u> ----- -----
7. · 8. (생 략)	7. · 8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내역

- 아동급식비: 총99,840천원
 - 지방비의 경우 시비 50%, 구비 50%로 실제 추가로 필요한 구비는 약 50,000천원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아동급식비 추가 소요예산(추정치): 총99,840천원(시비 50%, 구비 50%)
 - 급식비 지원 기준이 “중위소득 52% 이하”에서 “중위소득 60% 이하”로 변경되면 증가된 구간 내 해당하는 아동은 40여명으로 추출됨
 - 추출방법: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의 아동 추출(67명), 추출된 아동(67명) 중 기존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(27명)을 제함
 - 방학 중 1명당 급식카드 충전 평균 금액은 208천원으로, 208천원×40명×12개월=99,840천원이 추가로 필요함
- 방학 중 급식비는 시비 50%, 구비 50% 이므로 구비 추가 소요액은 49,920천원으로 추산됨
 - ※ 학기 중 급식은 국비(100%) 또는 학교 급식 또는 지방비(시비 50%, 구비 50%)를 통해 지원하므로,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 중 지방비가 학기 중 재원보다 많이 소요되어 최대 소요액을 추산하기 위해 방학 중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소요액 산출

[참고]

소득기준	지원정책
중위소득 50%	· 기초생활· 차상위· 국민취업제도· 서울형 안심소득· 교육급여
중위소득 60%	· 한부모·조손가족 급여· 취성패· 국민취업· 청년 월세
중위소득 70%	· 가사·간병방문
중위소득 72%	·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
중위소득 100%	· 중장년 취성패재난적 의료비서울형 긴급복지경기형 긴급복지위기청소년 지원
중위소득 120%	· 청년국민취업
중위소득 150%	·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이진희
연 락 처	02-2670-1613